

# 오프라인 유통마트의 법·행정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김택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A study on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etween Off line Distributive Markets and Small Markets.

Taek Kim

College of Liberal Arts, Jung Won University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 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기업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주제어** : 유통마트, 영업제한, 지방자치단체, 상생방안, 일몰규제, 소비자, 온 오프라인 쇼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o make transparent marketing system, environment which is to protect small business, consumer's. This Goal of this study is that focus on development of regional and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o protect small businessmen, to reserve consumer's buying choice. First of all, to examine causes of distribution maintenance and to will be analysed legal controversy of big distributive markets since local autonomy business limits. It is this study that concentrate on big distributive mart shutdown of business hour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e main focus of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ruling of the court that protest and accept of business hour in big distributive mart' problem and regulation, Second, to understand each of the judgement and problems of distributive shutdown systems, Third, to suggest the good distributive business trade act and the possible collaboration with focus on small and big mart System in Korea. This paper to analyze case of conflict and focus on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distribution since business limits.

**Key Words** : shutdown of big distributive market , limit of business hours, sunset regulation, small business, collaboration, online and offline shopping

Received 21 August 2015, Revised 26 September 2015

Accepted 20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Taek Kim

(Jung Won University)

Email: lasecurityr@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유통산업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본 논문은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과 실효성 문제 등을 고찰하여 대형마트 규제가 제한이 후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중소기업체나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영업마트제한의 법원판단과 재래시장 상권의 상권이 규제 이후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형마트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골목상권보호와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한 유통산업보호를 위해 중소기업활성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물 활성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문제점에서는 유통규제의 실효성을 고찰하고 법률적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보호육성제도 및 법률적 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유통산업의 연구의 제도적 법률적 선행연구로서 김성진(2013)은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분석을 통해 유통산업분야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박현신(2014)은 대형마트의 규제를 법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남윤형(2014)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유통업체 간의 공생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상권 활성화 제도의 성공을 위해 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마련하여 유통발전을 주장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15)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조례의 가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산업법과 행정절차법의 법적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경실련(2013) 실태조사는 유통산업법 이후의 법적 실효성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유통업계에 긍정적 기대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정책, 지자체의 규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외의 취지와 문제점을 법리적 관점

에서 분석하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법원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실증분석은 차후 과제로 분석할 것이며 법행정적 규제와 문제점은 언론보도의 사실 쟁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유통마트 제한의 내용과 문제점

### 2.1 유통산업규제 개념

유통규제는 법행정적 공적 제한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규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일어나자, 정부는 유통질서의 확립, 대형유통업체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대규모점포 등록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선거와 맞물리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가 월 1~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의무휴업일은 월 2회,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2]. 이것은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줄여 재래시장, 소규모 슈퍼마켓 등 영세 상인을 살리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3].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종전 대비 최대 45.6%나 줄었다. 또 재래시장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는 대형마트를 낼 수 없다. 재래시장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새 점포를 내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과정에

1) 유통산업발전법 1조, 종합법률정보

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반려하거나 중소기업단체와 협의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유통법의 개정 취지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줄이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통업 규제 덕에 영세상인의 형편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나 SSM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역 특산물이나 농수산물을 우선 판매하거나 일부 매대를 할당해 지역 중소기업인을 입점 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활동은 지역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게 소득을 늘리고 있는 변화된 유통질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4].

유통산업의 선진화는 고객의 요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형 유통업체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결과가 유통시장 장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면 이는 유통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다 [5].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2014년 성명서에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소비자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활동은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소비자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시행돼 왔었다"고 비판했다. 더 이상 대형유통 대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통법을 손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 소비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 2.2 유통산업 규제의 종류

유통산업 규제는 크게 행정적 규제와 법적 규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환경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규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통한 인허가나, 지도행위, 과태료부과 사실적 행위나 조치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규제는 유통산업관련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조례를 입법화시켜 유통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규제는 영업규제라든지 출점규제를 통해서 대형마트의 유통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한시킨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적 규제는 유통마트 설립에 있어서 환경적 입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를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서 도시계획시스템이라든지, 근로자보호규제, 안전보건규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적 규제는 도시 입지 규제와 출점규제로 나눈다. 입지규제는 도시계획지역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을 말하고 출점규제는 대형마트가 진출 시 개발유예조치, 설립영향조사보고서, 도시계획이나 구획화 범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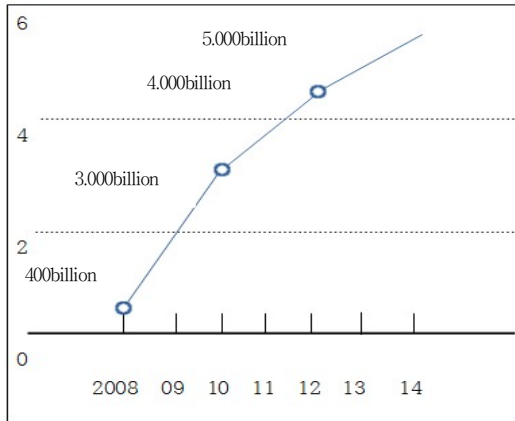
## 2.3 실효성

2013년 경실련의 조사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본격 시행되어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범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킨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예외 조항 없이 주말 및 공휴일 의무 휴업일 을 강력하게 명시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을 피해가기 위해 자율적으로 평일 휴무를 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또한 2013년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가 매출증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시작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하고 온라인 쇼핑물 성장의 [Fig. 1]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sup>2)</sup>



[Fig. 1] online shopping mall of big markets  
source:sk,11street(2014)

### 3. 문제점

#### 3.1 문제점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중소자영업자의 수가 5만 7천명이나 감소하는 등 경기 불황으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대형유통마트 영업제한 이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대형유통마트와 SSM은 이마트 에브리

2)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G마켓·11번가·옥션 등 온라인 쇼핑물에서 이뤄진 거래액은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3년 사이 50% 넘게 늘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는 증가 폭이 4조~5조원으로 더 커졌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정체됐거나 감소 추세다. 온라인 쇼핑물의 선전(善戰)과 대형마트·전통시장의 침체는 모바일 쇼핑의 확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 2013

데이 상품 공급점, 롯데슈퍼 상품공급점 같은 변종 SSM인 '상품 공급점'을 출시시키고 있는데 품 공급 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처럼 의무 휴업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대기업들은 상품공급점을 골목상권과의 상생모델이라고 말하지만, 전통 상업보존구역 1KM이내 진출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조치 등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10].

3)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준 대규모 점포(SSM)를 대규모 점포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 공급점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11].

두 번째는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 재벌들은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 한계와 규제에 부딪혀 복합쇼핑몰(아웃렛 포함)이라는 변형된 수단을 들고 나와 <Table 1> 정부규제가 유통 질서를 막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복합쇼핑몰을 제지할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12].<sup>4)</sup>

<Table 1> Regulation of Big Market Under Distribution Industry Act

Issue	Big Market	SSM	shopping mall
Limit of Business Hour	○	○	×
shutdown day	○	○	×
Protection of traditional commerce region	○	○	△

3)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2013년 5월 말 당시 전국적으로 약 610개에 이른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다.

4) 롯데 아웃렛 항동점은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 변경이 된 국내 최초 사례다.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의 업종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종 변경에 성공했다.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규제 조항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출점 제한'이 유일하다.(김상우, 2015)

세 번째는 유통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변종 영업허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출점할 수 없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일반상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복합쇼핑몰 상당수가 도심을 벗어난 교외에 위치한 탓에 사실상 출점제한 조치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입점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점포 개설자가 스스로 상권영향을 평가·작성, 관한 지자체에 제출하는 탓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개점 30일 전까지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시간상의 제약으로 엄밀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예로 롯데 측은 롯데마트 향동점의 아울렛 업종 변경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지하상가를 누락했지만, 업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13].

### 3.2 법률적 사례분석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 후 대형마트업체들의 반발이 심화됐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법원 소송이 제기됐다. 5)

#### 3.2.1 가치분판단

지자체 조례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소송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

-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2월에서 4월까지 전주시 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 지정
- 2012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49 지자체 관내 법원에 해당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4월 27일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 매출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기업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서울행법 2012.4.27. 자 2012아1234 결정)

#### 3.2.1본안 판결

-2012년 6월 법원판결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업업을 제한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위법판결로 보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구청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5)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지자체들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법 2012.6.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종합 법률정보 판례)

- 2012년 7월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함
- 2012년 7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은 개정조례에 대해 “월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는 위입입법의 취지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일률적인 제한은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이라고 영업제한 취소 소송 제기
- 2013년 9월 법원은 영업규제 조례에 대해 합법 판결<sup>6)</sup>
- 헌법소원제기:2012년 2월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심판청구<sup>7)</sup>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도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소유통업자,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5].

반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롯데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

- 6) 서울행정법원(13년9월):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았고 중소상인보호를 위해 필요“  
광주지법(14년1월): 영업제한의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 구체적인 계량 없이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14년2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결했다. 남윤형, 중소기업포커스 24-3호,2104에서 재인용
- 7)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유통법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지자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만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률에 의해 직접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sup>8)</sup>

### 3.2.2 법원판결 의의

서울고법 행정8부는 2014년 12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294)에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취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 법은 전통시장보호 효과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서 소비자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또한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6]. 서울고법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자,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유

- 8)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통산업발전법'이고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점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7] .<sup>9)</sup>

## 4. 개선방안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sup>10)</sup>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법제도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선정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이행 권고하도록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 주식처분이나 기업분할명령 영업

양도 등의 조치가 포함하는 법안이다.

둘째,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리점사업자와 본사와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삼아 대리점사업주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 사업자에게 대리점 갱신계약권을 부여하는 대리점 공정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들의 급속한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상가 분쟁이 심하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상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고 보증금의 월세전환도 부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월세 상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여신금융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결제금액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개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18] .

다섯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농식품가공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농촌의 쾌적성 자원에 대한 선호도의 증대 등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여 유통산업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19] .

### 4.2 제도적 방안

#### 4.2.1 변종 SSM 개선방안

대기업의 변종 SSM을 준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과 중소 유통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 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20] .<sup>11)</sup>

9) 1심에서는 영업제한처분이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매상의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처분의 대상이 된 대규모 점포들보다 전통시장의 중소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소송 대상이 된 지자체들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오전 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또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판단이 었갈렸다. 1심 재판부는 '영업제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았다(양은경,조재희,2014)

10) <개정 2013.3.23>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3. 그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의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2013년 이언주 국회의원은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와 주 대규모점포(SSM)가 기존 법률에 규제를 받게 되어 확장에 제동이 걸리자 법의 맹점을 약용한 대기업의 변종 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의 맹점을 약용하는 대기업의 변종수

또한 대형마트와 SSM을 신규 출점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sup>12)</sup>대형마트와 SSM은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 4.2.2 일몰규제개선

일몰 규정은 지난 2010년 11월 5년 뒤 일몰 방식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11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데 일몰을 앞두고 다수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22].<sup>13)</sup>유통산업발전법상 준 대규모 모점포 정의·등

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소매상권,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이인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는 골목상권을 무분별적으로 확장하는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 규정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법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하기 이전에, 문어발식 확장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일구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남재균,2013

- 12)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지역 반경 3km, 매장면적 330㎡ 이상 SSM은 반경 500m, 매장면적 330㎡ 미만 SSM은 반경 300m로 정하고 있다.(남재균,20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52호, 시행 2015.05.04.],종합법률정보 법령)
- 13)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유통산업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

록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효력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 방식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통 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이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이다. 해당 구역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대규모점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준 대규모 점포까지 출점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출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일몰 시점 연장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 전반을 살펴야 하는 정부부처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3].<sup>14)</sup>

#### 4.2.3 대형마트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출점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안과 같이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24]. 현재의 형식적인 등록절차가 아닌 독일, 프랑스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상권영향평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4.2.4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 강화 방안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외 대형마트 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의무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요청,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련 권한들을 활용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에 적극 나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등을 보호해야 한다 [25].<sup>15)</sup> 의무휴업시 전통시장, 중소유통 고객유입

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전자신문,2015)

- 14)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유통환경, 소비자보호, 농민, 납품 중소기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과연 오프라인 점포를 규제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15)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①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



(Table 2) Revision of Distribution Industry Act by National Assembly

proposal date	Rep.	Major contents
Mar.4,2014	Kim,J.N	fine for violation day
Sept.23,2014	Chun,S.O	three day shutdown while korean tradition celebration day
Dec. 11,2014	LEE,J.G	tradition market boundary from 1km to 2km
Jan.28,2015	Park,J.W	mayor must listen to the distribution committee
Feb.5,2015	Shim,J.K	must be enrolled to the mayor
Feb.27,2015	Hong,I.P	big market must be submitted to the planning report and listen to the public opinion
Mar.4,2015	Lee,H.J	sunset policy will be delayed until dec.31,2015

Source:National Asssembly information System, Kim S.W, 2015. recite

을 이한 방안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들도 온라인 정보를 통한 물품판매에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에 온라인쇼핑몰 개설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 4.2.5 전자상거래 유통 표준시스템구축

콘텐츠 유통의 선진화와 글로벌 유통경로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유통체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이 유통메타데이터의 표준화이다. 메타데이터는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설명 뿐 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분류하고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유통표준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6]. 또한 고객들이 쇼핑물에 대한 이미지나 명성 및 쇼핑물을 접촉할 때 느끼는 감정에 주로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핵심적인 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인터넷 쇼핑물의 선택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과 지자체에서 알아야 한다 [27].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에 대한 수용 그리고 이를 통한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해당 영향요인에 대한 차별적 광고, 마케팅 활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통고객에게는 인지된 위험 요인을 상쇄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결국 구매행동에 이를 수 있도록 교환 및 환불 등에

대한 정책은 물론 개인 정보 및 거래 정보, 결제 및 보안 시스템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8].

#### 4.2.5 국회의 관련법 개정노력

대형마트와 규제와 관련해 2012년 10월15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유통법(19건),상생법(2건),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건),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1건) 등 23건에 이르고 있다 [29].

현재 유통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총 1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Table 2>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안을 제출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 3월 김제남의원의 의무휴업일 위반 과태료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안을 낸 이후 2015년 7월 박지원의원이 상권영향평가서에 인접지역 영향을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안 제출이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본다.

###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5.1 정책적 제언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자치단체장이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라는 조건을 달아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출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52호, 시행 2015.05.04]중합법률정보 법령)

부분의 지자체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를 요구하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표 언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마트 규제 강화에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sup>16)</sup> 소비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중요한 사실은 유통규제는 철폐되어야 하고 소비자 선택과 시장논리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형유통마트의 담합이나 횡포도 등장하므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방안이나 보호를 어떻게 조정하고 보완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31]. 먼저 정책적 방안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중소기업유통의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점 및 영업제한 규제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보호제도가 진행되는 기간에서 유통진흥정책을 통해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유통산업 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sup>17)</sup> [32]. 셋째,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들 간의 공생, 상생발전을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회, 정부, 지자체가 유통산업의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시적 입법방안과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sup>18)</sup>

16) 2014년 3월 2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유통산업포럼, ‘유통규제법, 지속성장에 약인가? 독인가?’에서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소비자도 소상공인에 대해 정서적으로 응원하지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서비스 받는 것을 원한다”며 “경제적인 약자가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대기업과 전통 상권의 갈등은 경쟁력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전통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 유통산업발전법 43조

18) 유통산업발전법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중소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그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 5.2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통산업의 법행정적 규제와 이에 대한 대형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정부 규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본 취지에서 비롯됐다면 정책적 방안의 모델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고 본다. 또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기업 간의 공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통규제질서를 통해 대형업체와 중소기업간의 공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근 기업의 상생발전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와 정책 제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가 법률적 행정적 규제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였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5.3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유통산업의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형마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행정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질서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시민 고객들의 소비욕구라든지, 실효성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률적 사례와 행정적 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신문보도와 전문가 면담을 통한 유통산업 폐해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추론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증조사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References

[1] H. M. Chung, “Distribution and Local Autonomy: Comparative Analysis of Big Market SSM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법원법률정보

- Regulation in Korea and U.S.A”, Local Autonomy study, Korea Local Autonomy Law Society, 14-3, pp. 469-490,2014
- [2] S. M. Kim, “Useless of Traditional Mart and decrease Pro4.15,fit of Big Mart”, Cho Sun Press, 2015.
- [3] [4] C. H. Lee, “Restriction of Distributive Mart”, Cho Sun Ilbo Press.4.3,2014.
- [5] [7] [10] [14] [32] Y. H. Nam, “Big Mart regulation and small distributive mart Development”, Small business Focus, Institute of Small business, Vol.14, No.3, 2014.
- [6] H. A. Kim, “Welcome to court decision of Business Hour rules”, Consumer Watch, 2014.
- [8] Citizen Coalition Economic Justice, Business hour and increasing of Mandatory time is positive but shortage of protection of the small super”, 11.29,2012.
- [9] Citizen Coalition Economic Justice, “Business hour and increasing of Mandatory time is positive but shortage of protection of the small super” ,11.29,2012.
- [11] J. K. Nam, “Congresswoman, Lee Un Joo, Distribution Industrial Acts’s ReAmend”, Sisa Korea,9.13,2013.
- [12] [13] S. W. Kim, “devastating of mart at regulation free”, Tomato Press, 8.12,2015.
- [15] J. S. Han, “Is illegal that Big Mart shutdown’ Regulation?”, Money Today, 8.24,2015.
- [16] H. J. Chang, “Amend of regulation in Distributive Big Market Business Hour is that violation of law”, Lawtimes, Press,12.12,2014
- [17] E. K. Yang..H .J “Obligatory shutdown of Mart that is restriction of consumer choice right”, Cho Sun Il Bo Press,12.13,2014.
- [18] S. J. Kim, Regulation of Big distributive Store and Protection of Small businessmen in National Assembly Seminar, Sponsored by Congressman, Kim Je Nam,2013.
- [19] W. K. Yu, H. Y. Choi, “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JDC,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2, No.10, p p.45-59 ,2014
- [20] J. K. Nam, “Congresswoman, Lee Un Joo, Distribution Industrial Acts’s Re Amend”, Sisa Korea,9.13,2013.
- [21] H. U. Joe, “Question that regional protection of distributive industrial Acts”, Kang Won do min il bo Press,2013.
- [22] [23] H. J. Lee, “Restriction of Big Mart Regulation”, Electronic News Paper, 6.21, 2015.
- [24] Citizen Coalition Economic Justice, “ Business hour and increasing of andatory time is positive but shortage of protection of the small super” ,11.29,2012.
- [25] Citizen Coalition Economic Justice, “Amend of regulations with big market in the autonomy”, 7.3.1.2, 2013.
- [26] C. M. Park, H. J. Jang, C. Koh, K. H. Kim, “Analysis of Factor’s Priority for Activating the Industry of Global Content, Distribution”, JDC,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4, pp. 11-20, 2014.
- [27] K. H. Yim, J, H. Kwon, “A Study on the Effect of Shopping Value of On-Line Sopping-Mall on Shopping-Mall Satisfaction - Meditating Effect of Price Sensitivity”, JDC,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2. No.11,p. 50,2014.
- [28] H. M. Moon, K .R. Lee, S. J. Lee, “The Effects of the Social Risk on the Resistance of Purchase in Mobile Shopping”, JDC,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2, No.12,pp. 93-106,2014.
- [29] S. W. Kim, “devastating of mart at regulation free”,8.12, Tomato Press, 2015. distributive Mart”, Cho Sun Ilbo Press., 4.3,2014.
- [30] H. S. Park,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relations Through regulation of Big Mart, Society for Koran Policy Spring Conference, 2014.
- [31] J. P. Noh, “Comparative study of Distribution Regulation, Regulation Study, Vol.12, No.2, pp.110-130, 2003.
- [32] Supreme Court Law Information, Acts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2015.

김택(Kim Taek)



- 1986년 2월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학사)
- 1991년 2월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97년 2월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02년 1월 :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Post Doc.)
- 2012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박사수료)
- 2011년 2월 ~ 현재 :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행정학, 범죄학, 융복합정책
- E-Mail : lasecurity@naver.com